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재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845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3.

발 의 자 : 김재국, 현옥순, 이진분, 유재수, 한명훈, 최진호, 송바우나, 한갑수, 박은정, 선현우, 최찬규, 김유숙 의원(12인)

1. 개정이유

○ 의원 발의·위원회 제안 또는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재정부담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의원·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및 재원조달 방안 작성(안 제3조제1항)

○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(안 제3조제3항)

○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 작성(안 제5조제1항)

○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안에,

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첨부

(안 제5조제3항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
4. 현행조례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○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【붙임 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발의 또는 제출”을 “발의·제안 또는 제출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안산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(이하 “의원 등”이라 한다)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·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 “(비용추계서 협의)”를 “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 전

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재국 의원 대표발의 (행정 2503)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에 따른 안산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.
1. “비용추계서”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“비용추계”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	1. ---------- 발의·제안 또는 제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비용추계서의 작성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	제3조(비용추계서의 작성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안산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(이하 “의원 등”이라 한다)가 예산

현 행	개 정 안
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	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·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.
제5조(비용추계서 협의)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	제5조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안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.	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<신 설>	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·규칙심의회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비용추계서 제출)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.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.	상정안에 붙이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. <삭 제>

계서를 작성하여 안산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.

제6조(비용추계서 제출)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2.01.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1.5.)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